

김**	1973-09-05		재등록
김**	김** 1984-05-15	울산광역시 북구 신기3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운영실 문의전화 : 052-295-6597)

2021년 10월 01일

농소2동장

